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취약계층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지원범위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 전기·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다.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협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시장이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난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예산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 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소화기1, 감지기2대 설치에 따라 세출발생 (조례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재난취약계층 세대당 소화기 1대 (25,000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 (20,000원)으로 총45,000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나.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조례안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303,435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조례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합계
대상자세대수	2,000	2,400	2,343	6,743
금 액	90,000	108,000	105,435	303,43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비				
시·군비	90,000	108,000	105,435	303,435
기타				
합계	90,000	108,000	105,435	303,435

5. 부대의견

본 추계결과는 재난취약계층의 신규책정·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 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재난과 이진석
연락처	054-480-67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재난취약계층 현황 (2017년11월30기준)

(금액 : 천원)

연도 구분	계		2018		2019		2020	
	세대수	소요액	세대수	소요액	세대수	소요액	세대수	소요액
합 계	6,743	303,435	2,000	90,000	2,400	108,000	2,343	105,435
국민기초 생활보장	5,197	233,865	1,540	69,300	1,850	83,250	1,807	81,315
차상위 계층	296	13,320	90	4,050	100	4,500	106	4,770
노인 돌봄이	1,250	56,250	370	16,650	450	20,250	430	19,350

소관 실·과		안전재난과
입 안 자	과 장	류 형 욱
	담 당	조 형 호
	담 당 자	이 진 석 (480-6732)